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6조 및 제10조의2제3항).
-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·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,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(안 제7조).
-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,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(안 제10조).
-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,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(안 제10조의2제4항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0조제1항 본문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의 지급방법만 규정되어 있어서, 지급결정 이전의 아동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,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<u>지급한다.</u> 다만,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	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아동수당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- 그 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윤 상 열)